

■ 교육

대학들이 '대학 순위'에 목매다는 이유

대학들이 유달리 신경 쓰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 순위(랭킹)이다. 왜 그럴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대학들이 순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순위가 학생 유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미국 대학 순위/랭킹을 내기 시작했을 때 각 대학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매체의 대학 순위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과거 명성을 누리던 일부 대학들은 랭킹에서 처지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별 볼일 없던 대학들이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기를 쓰고 순위/랭킹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학 순위/랭킹에는 함정이 많다. 자의적 요소가 많은 것이다. 각 대학들은 유에스 뉴스가 매기는 순위가 교육 수준을 알리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이를 참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쓴다.

미국 대학 순위/랭킹을 정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학 합격률이다.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자 수가 늘면 합격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각 대학은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지원해 달라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SAT나 PSAT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편지가 쇄도한다.

일부 학생들은 "하버드에서 나를 오라고 했어!"라며 흥분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에게나 보내는 편지다. 어떤 대학은 일찍 지원을 하면 원서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찍 지원하면 에세이를 면제시켜주겠다고 대학도 있다. 원서를 일단 제출하면 후속 서류를 내지 않아도 그 학생을 지원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 손해가 아니다.

대학들의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는 표준화 시험 점수다. SAT, ACT점수가 높은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의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 대학들이 쓰는 꼼수 가운데 SAT, ACT점수 제출을 옵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점수가 높은 학생만 제출하게 되고 낮은 학생은 내지 않는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만 점수를 제출하므로 대학의 전체 SAT점수 분포는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대학들은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학교 랭킹/순위를 올리려고 한다.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는 평생 일대 중대한 문제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들과 유에스뉴스의 장사속 마케팅에 속지 말고 냉정함을 갖고 대학을 골라야 한다. 명성이 높다고 나에게도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 칼럼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현지 법인에 직원을 파견해야 할 때

캘리포니아는 한인의 비율도 높지만, 태평양에 바로 맞닿아 있어 무역이 활발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장 먼저 지사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일 것입니다. 미국은 법인 설립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신설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한국에서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까다로운 비자 준비 과정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 가능한 L-1주재원 비자와 E-2직원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1 비자는 우선 한국에 위치한 본사가 외국 국적을 가진 회사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L-1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에 비해 E-2비자는 한국 회사의 소유주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를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미국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의 국적 역시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대기업의 경우 E 비자의 다른 자격 요건을 만족했지만, 그 한국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직원의 E 비자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L-1비자는 또한 파견 직원이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즉, 다른 회사의 경력직 직원을 신규 채용(스카우트)해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E-2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L-1비자를 좀 더 세분화하면, 본사에서 간부직급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L-1A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첫 승인 시에 3년, 연장을 통해 총 7년의 기간을

받게 됩니다. L-1B 비자는 본사에서 specialized knowledge 가 필요한 기술직 직종으로 취업을 하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첫 승인 시에 3년, 연장을 통해 총 5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케이스에는 적어도 미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1년 정도의 운영비를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한 L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후에는 미국 지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장 체류 기간은 7년, 또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이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은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L-1A비자와 동일하게 간부직급으로 일하게 될 분들과 L-1B비자처럼 지원자가 미국 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E-2비자는 어떤 자격으로 파견이 되든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비자 모두 배우자 분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과 파견되는 직원의 개인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그레이스 성형외과

아름답고 자신있는 나를 찾는 곳

GRACE KIM AUSTIN MD



코(미용) 성형

입술 주름

얼굴(안면) 리프팅 (실리프팅)

눈가 주름 처진 눈 리프팅

보톡스 필러

목 리프팅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IRVINE (949)409-8850

16300 Sand Canyon Ave, #1011, Irvine, CA 92618

NORTHRIDGE (747)203-7750

17114 Devonshire St, #101, Northridge, CA 91325

www.drgracekimaustin.com

@drgracekimaustin